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김정순



연구보고 2012-16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김 정 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spreading culture of sharing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Soon

2012.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빈곤, 생존경쟁,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해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1980년대 세계 경제 침체 이후 복지국가의 쇠퇴와 정부 역할의 축소로 인해 시민사회가 자발적 나눔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전개됨.
- 현재 우리 사회는 나눔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금기관의 성금 유용 등 나눔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지도층의 선도적인 나눔도 미흡한 실정임.
- 누구나 일상적으로 쉽게 나눔을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문화 관련 단체의 투명성 제고, 나눔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나눔의 생활화 및 교육 시스템, 새로운 형태의 나눔 개발 등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나눔 관련 다양한 법령에 산재된 규정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 모금 중심의 기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나눔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나눔 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

○ 일반적 의미의 나눔과 법률적 의미의 나눔의 개념 고찰

○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

- 나눔문화 관련 2011년 사회조사결과 및 기부 참여 현황,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참여 현황 파악

○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 기부금에 관해서는 기본법인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결핵 예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에 관해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생명나눔에 관해서는 「혈액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의 나눔 문화 확산 관련 법제 현황

○ 미 국

- 나눔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재산 기부행위
- 미국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가 설립되었고, 역대 행정부는 국내외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제 마련

- 연방 세법에 따라 기부행위를 한 자에게 소득세 공제, 기부받은 단체에 대한 세금혜택 등 규정

○ 독일

- 대표적인 나눔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이지만, 독일의 독특한 나눔 형태로 순수 자원봉사와 임금근로의 성격을 내포하는 명예직 제도(Ehrenamt) 활용
- 시민적 나눔에 관한 기본법은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r weiteren Stärkung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 BüEnStG)”
- 2011년에 새로 창설된 연방자원봉사제도(Bundesfreiwilligendienst, BFD)에 관해서는 연방자원봉사법(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 BFDG)과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Das Gesetz zur Förderung von Jugendfreiwilligendiensten: JFDG)이 규정
- 명예직 활동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세제 혜택 규정

□ 나눔 문화 확산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선방안

-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의 법제화, 지역 자원봉사 센터 민영화 및 자율성 보장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제 도입, 원칙허용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 기부금품 사용기한 제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실시, 모범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격 부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개 문제

○ 신탁법의 개선방안

-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 신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및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개선방안

III. 기대효과

-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다양한 나눔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누구나 쉽게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의 확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결정에 기여
- 현행 나눔 관련 법제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법제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령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어 : 나눔, 나눔문화, 자원봉사, 기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Recently consumer product safety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damaged or illegal products which are harmful to children's health, lives, and bodies.
- Children's physical conditions, perception abilities, behavior patterns or the lik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dults and thus their abilities to predict and deal with safety hazards caused while using products are lower than those of adults.
- In the case of an ordinary adult, safety hazards may be prevented to a certain degree by means of notices, including precautions, however, providing only notices or lablings are not enough to prevent dangers to children.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product safety law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I. Major Contents

-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product safety laws, scope of products, concept of product safety and statutory provisions regarding children
- System and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s to protect children
 - Acts relating to product safety management
 - Focused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provisions prescribed by Framework Act on Consumers,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s Act,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Children's Amusement Facilities, Child Welfare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duct safety policies
 - Methods to ensure the safety of products or the like
 - Quality control system,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safety hazards, safety checks, obligation to report information on defects of products, voluntary recall system, mandatory recall ord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child-resistant packaging requiremen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network, or such

Current status of product safety law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United States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Children's Safe Products in Washington State

○ Japan

- Consumer Products Safety Act, Act on Regulation of Hazard Substances in Household Articles, and Food Sanitation Act

Issues related to product safety laws and suggestions to improve them

○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s to Protect Children

- In a long-term view perspectiv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concern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for Protection of Children (Tentative title)
- In a short-term view perspectiv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regarding product safety to protect children in the subject area of product safety

○ Improvement of children's product safety policies

- Improvement of system to formulate product safety policies

- Construc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product safety policies
- Review to establish an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children's product safety
- Improvement of reporting,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product safety information
- Expansion of the number of testing institutions and liaison with information gathering institutions

III. Expected Effects

- Contribution to make further policy decision by suggesting efficient methods to manage children's products so as to protect children who are in a weak and vulnerable social position
- Practical use of suggestions to reasonably improve product safety laws governing children's produ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Key Words : Nanum(Sharing), Nanummunhwa(Culture of sharing), Volunteer, Contribu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6
제 2 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	19
제 1 절 나눔의 의의와 개념	19
1. 일반적 의미의 나눔	19
2. 법령상 의미의 나눔	19
제 2 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	21
1. 나눔문화 관련 2011년 사회조사결과	21
2. 기부 참여 현황	23
3.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참여 현황	26
제 3 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28
1. 개 관	28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0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9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0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6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4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6
8. 신탁법	73
9. 조세관계법	75
제 4 절 소 결	81
제 3 장 외국의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83
제 1 절 미 국	83
1. 개 관	83
2. 자원봉사관련 법제 현황	84
3.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법제 현황	95
4. 정리 및 시사점	101
제 2 절 독 일	102
1. 개 관	102
2.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 현황	103
3. 자원봉사제관련 법제현황	107
4. 시사점	112
제 4 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제 1 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선방안	113
1.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	113
2.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및 자율성 보장	114
제 2 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15
1.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제 도입	115
2. 원칙허용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	117

3.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	120
4.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	120
5.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실시	123
6. 모범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123
제 3 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안	124
1.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격 부여 문제	124
2.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개 문제	127
제 4 절 신탁법의 개선방안	129
1. 공익신탁제도의 개선	129
2.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 신설	131
제 5 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32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132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133
3. 개선방안	134
참 고 문 헌	13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눔의 문화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나눔 문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제대로 된 나눔문화는 성숙한 사회환경을 기반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나눔 문화는 한 사회 또는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나눔선진화를 지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빈곤, 생존경쟁, 소극양극화 등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또한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 이후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쇠퇴와 정부 역할의 축소가 세계화 차원에서 전개되면서 시민사회가 자발적 나눔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눔은 자선이나 박애를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으므로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나눔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나눔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계층간 갈등이 증폭될수록 나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금기관의 성금유용 등으로 나눔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나눔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쉽게 나눔을 확산할 수 있도록 모금기관 등 나눔문화 관련 단체의 나눔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나눔활동에 대

한 정보제공, 일반국민의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나눔의 생활화 및 교육 시스템의 마련, 나눔의 새로운 형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나눔 관련 다양한 관련 법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신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조세특례제한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나눔 관련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금전모금 중심의 기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에 동참하는 참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인 나눔의 범위는 기부와 자원봉사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장기등 기부행위인 이른바 ‘생명나눔’행위와 해외에 대한 나눔에 관한 법제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2장에서는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를 살펴본다.

- i) “나눔”의 의의와 개념을 정리한다. 자선, 박애, 기부, 자원봉사, 시간기부, 재능기부, 교육기부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나눔”과를 비교 분석하여 법률상 나눔의 의의와 개념을 파악한다.
- ii) 다음으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한 나눔문화 관련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결과를 살펴보고 나눔문화의 형태 및 확산정도를 알아보며, 그리고 기부참여현황과 자원봉

사참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나눔문화확산 관련 현황을 파악해본다.

- iii)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나눔단체와 관련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그리고 나눔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나눔문화확산 관련 현행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2) 제3장에서는 외국의 나눔문화관련 법제현황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는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법제현황과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에도 기부법제와 자원봉사활동법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3) 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법제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과 법제

제 1 절 나눔의 의의와 개념

1. 일반적 의미의 나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를 자선이나 박애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선(Charity)은 박애보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개념으로, 종교적 의무를 기반으로 하여 빈곤한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나눔을 행하는 것으로 주로 고통을 경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박애(philanthropy)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인류애)를 말하는 것으로, 자선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자선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정하여 나눔을 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박애는 사회의 모든 약자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눔이라는 개념은 위의 자선과 박애라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전적으로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누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나눔”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인 ‘가르다’, ‘분류하다’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나눔의 의미는 “자선”에서 “기부”로 다시 “나눔”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법령상 의미의 나눔

현행 법령에서 ‘나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부’, ‘기부금’, ‘기부금품’, ‘자원봉사활동’ 등의 용어가 나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월 26일에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¹⁾ 제27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제1호)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나눔’이라는 용어가 법률에서 최초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까지 ‘나눔’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비법률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나눔’의 법률적 의미와 가장 근접한 용어로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호).

「법인세법」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를 행하는 경우를 기부로 파악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활동”²⁾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호).

법률적 용어로서 ‘기부’는 물질적인 유형의 증여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시간기부’, ‘재능기부’, ‘교육기부’ 등의 비법률적 용어도 등장함으로써 ‘기부’라는 것이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무형의 형태도 포함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기부’는 ‘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고, 나눔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결국 ‘나눔’은 ‘기부’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법률적 용어사용에서 나오는 추론이며, 개별법에서 사용되

1) 법률 제11238호, 2012.1.26, 전부개정(시행 2013.1.27)

어 왔던 ‘기부’는 그 범위가 나눔보다는 좁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률상 나눔은 ‘기부’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명나눔’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때의 나눔은 법률상 ‘기증’(기부)의 의미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거나(동법 제4조제2호),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3호). 이에 따라 생전 골수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각막기증 등의 장기등의 기증이 이른바 ‘생명나눔’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눔’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이전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공형식이 유형물을 포함한 무형물, 자원봉사 행위 또한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나눔’의 개념을 현행법 하에 정의되고 있는 재산적 이전행위와 일정한 행위를 포함하여 생명 나눔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눔이란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된 물질적 이전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현황

1. 나눔문화 관련 2011년 사회조사결과

통계청은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중 기부·자원봉사에 대하여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2011.7.15.~7.29.(15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나눔문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부활동에 대하여 ①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중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6.4%이며, 물품보다는 현금을 더 많이 기부하며, 기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이며, 기부는 주로 ‘모금단체’(46.9%)를 많이 이용하며, 기부횟수는 평균 6.1회, 1인당 기부금액은 평균 16만 7천원이며, 주기적으로 기부한 사람은 31.2%이며, 주기는 ‘월 단위 이하’가 64.1%이다. ② 물품을 기부한 사람은 약 8.5%이며, 주로 ‘종교단체’(35.6%)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물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3.4회이고, 주기적으로 기부한 사람은 34.6%이며, 주기는 ‘반기 단위’가 54.9%이다. ③ 기부동기 및 분야를 보면,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3.3%)이고, 주로 ‘사회복지분야’(82.2%)에 기부를 희망하며, ④ 기부대상의 인지경로는 ‘언론매체’(29.4%)를 통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직장·학교(24.5%), 종교단체(19.8%)등의 순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향후 기부의향에 대하여는 계속 기부의향이 있는 경우는 45.8%, 향후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7.3%로 집계되었다. 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54.8%)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20.6%),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0대의 경우에는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23.6%)이 더 우선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응답에서는, ① 자원봉사 참여율은 19.8%(10대(77.7%)로 가장 높다.)이며, 자원봉사 평균 참여횟수는 연간 7.1회, 1회 평균 참여시간 4.4시간, 향후 2년 이내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45.6%로 나타났고, ② 활동분야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관련분야’(58.2%)가 최다이고,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45.9%로 응답했으며, ③ 자원봉사활동인지경로로 절반 이상이 ‘직장·학교’(52.4%)를 통해 인지하고 있으며, ④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9%이며 활용분야로는 ‘아동학습지도’(24.1%)가 최다로 나타났다.

2. 기부 참여 현황

자선원조재단(CAF:Charities Aid Foundation)이 발표한 2011년 「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행위 참여비율은 35%로 전세계 153개국 중 57위이다. 이는 2010년 81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이나 미국과 아일랜드 등 기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GDP 규모에 대비한 우리 나라의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GDP 대비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액 비율은 0.9%이고, 미국은 2.2%이다.

〈표 1〉 GDP에 대비한 기부금 지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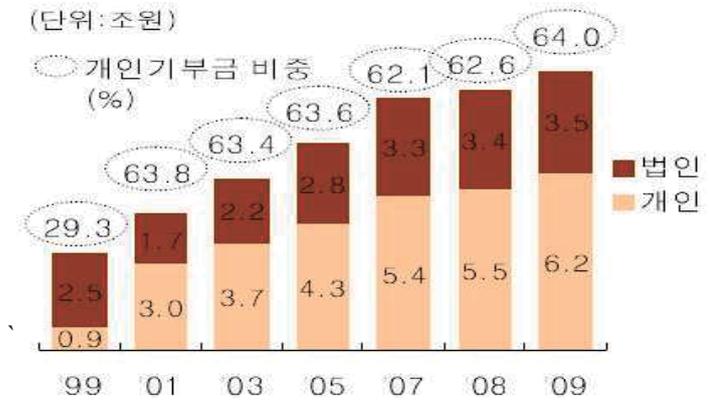
(단위: 억원, 억달러, %)

	기부금(A)	GDP(B)	A/B
한 국	85,914	9,750,130	0.9
미 국	3,064	138,076	2.2

* 2007년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IMF, Data and Statistics

기부의 주체별 비중을 보면 개인기부와 법인 기부의 비중이 1999년 30:70에서 2001년 64:36으로 역전된 후 2009년 64:36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기부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우리나라의 기부 주체별 추이 및 비중



* 경기개발연구원(2011),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문화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개인·단체의 기부를 통한 민간복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기업과 종교단체의 사회공헌활동,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등의 급여를 총칭한 통계로 나눔통계가 있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중 법인유입금이나 후원금 등의 자발적 재원규모에 대해 추계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수(2009년말 기준) 3,507개소 중 1,027개 시설(29.3%)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별 세입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3〉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별 세입구성(2009년)

	계	정부 지원금 ¹⁾	이용자 부담금 ²⁾	나눔통계		기 타 ⁵⁾
				법인 유입금 ³⁾	후원금 ⁴⁾	
계(억원)	25,535	18,648	1,811	1,105	2,081	1,889
(%)	100.0	73.0	7.1	4.3	8.1	7.4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

* 음영부분은 나눔통계임.

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2) 시설이용자의 부담금 3) 법인, 종교계(종단본부, 교구, 예당·말사 등의 법인)지원금 4) 종교기관, 기업·재단, 민간모금단체, 공공기관, 개인, 기타 등임 5) 잡수익, 전년도 이월금 등

〈표 4〉 민간모금단체의 모금 규모(2009년)

국고지원금 제외(단위: 백만원)

모금명칭	모금주체	주요 사용분야	배분액
계			466,141
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 전 분야	260,832
재해의 연금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8,982
적십자 회비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 등 적십자 활동	49,354
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 홍보, 진료 등	5,865
기 타2)	World vision 등	사회복지사업 전 분야	141,108

* 보건복지포럼, 2011.12.

* 기타 2) World Vision, 한국복지재단, 한국심장재단,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한국 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라이온스, 그리고 UNICEF한국위원회, 아이들과 미래, 아름다운재단, 여성재단 등임.

〈표 5〉 전국푸드뱅크 현황²⁾

(단위 : 개수, %) 일반현황

전체/구성비	계	구 분						
		법 인	단 체	이용 시설	생활 시설	봉사 센터	시군구 직영	기 타
개 소	424	132	84	156	30	10	9	3
비 율(%)	100	31.1	19.8	36.8	7.1	2.4	2.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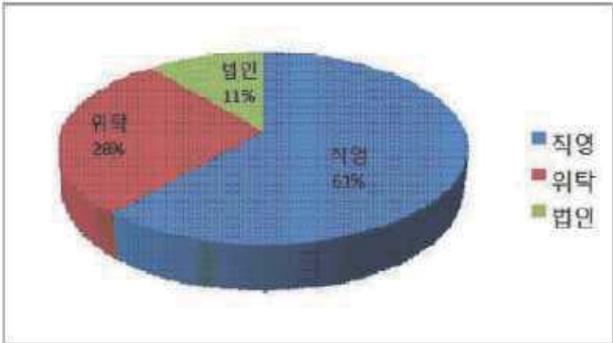
연 도	계	기부물품접수통계					
		주식류	부식류	식재료	간식류	생활용품	기 타
2008	49,264,363	20,471,277	7,427,928	9,182,837	9,752,672	1,458,172	971,477
2009	60,435,300	25,461,605	8,005,575	8,874,394	13,155,586	2,690,709	2,247,431
2010	72,759,863	27,757,961	10,152,350	12,409,435	14,345,960	6,753,665	1,340,492
2011	97,230,246	35,253,723	13,337,573	18,100,629	18,564,977	10,169,780	1,803,564

3.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참여 현황

2010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는 순수직영이 76개소(31%), 혼합직영 75개소(30%), 위탁 68개소(28%), 법인 27개소(1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지역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0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다.

2) http://www.foodbank1377.org/statistics/give.jsp?menuId=4_02(2012.10.24.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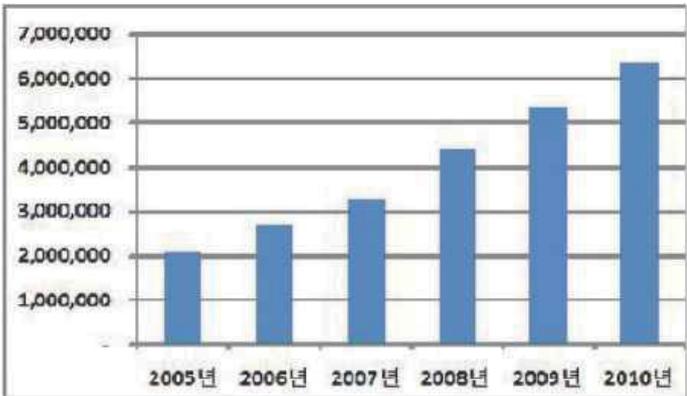
〈표 6〉 201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2010년)³⁾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6,310,334명으로 2009년말 대비 946,899명 (18%)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3%)보다 많다.

〈표 7〉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⁴⁾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인원수	2,083,704	2,681,193	3,279,911	4,396,633	5,363,435	6,310,334

3) 행정안전부, 201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센터별 운영형태)

4) 행정안전부, 201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제 3 절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1. 개 관

나눔과 관련된 법규정은 현재 기부금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으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법률로는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 회법에 관한 법률들이 있다. 그리고 식품기부의 경우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그 소관 부처 또한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자원봉사 나눔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그 근간이 되고 있다.

생명 나눔과 관련해서는 혈액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로 되어 있다. 나눔 관련 법률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우리나라의 나눔 관련 법률 현황

	법률명	주요내용	소 관
기 부 금 품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절차·사용방법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법	의연금품의 모집·사용 규정	소방방재청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문화체육 관광부

법률명	주요내용	소 관	
신탁법	공익신탁에 관한 사법관계규율	법무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보전·관리	환경부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재단 설립·운영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결핵예방법	크리스마스쌀 및 모금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분야의 공동모금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	
식품기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보건복지부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원	행정안전부
혈액	혈액관리법	헌혈권장 및 헌혈자 보호 의무 규정	보건복지부
장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존중 및 활성화 규정	보건복지부
인체조직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기증 등 규정	보건복지부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의무부과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나눔관련 공익활동 단체 및 법인과 관련한 법률 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우리나라의 공익활동 단체 및 법인과 관련된 법률 현황

법률명	주요내용	소 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정	법무부
민 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무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 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등	법률의 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
종교법, 향교재산법, 사립학교법 등	법률의 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 관련 규정	각 부처

아래에서는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⁵⁾

(1) 개 관

이 법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⁶⁾되었다. 2008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주무부처의 명칭을 수정하는 타법개정이 있었고 이 개

5) 최종개정 2008.2.29(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2009.2.29. 시행)

6) 법률 제7669호, 2005.8.4(제정), 2006.2.5(시행)

정법이 현행법이다. 총 20개 조로 구성되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법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국무총리 소속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제8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자원봉사자의 보호(14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제15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제17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제1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법 제1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내용

1) 목 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자원봉사활동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법 제2조 제1호), ②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법 제2조 제2호), ③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2조 제3호), ④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4호).

3) “자원봉사활동” 등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②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동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③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④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법 제3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법 제4조).

5)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와 벌칙

법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을 해서는 안된다(법 제5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법 제20조).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6조).

7)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 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이다(법 제7조).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법 제8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③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8조제2항).

다.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8조제3항).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 실무위원과 민간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3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

9)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⑤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법 제10조 및 동법 시

행령 제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

10)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법 제11조).

11) 포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법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동법 시행령 제8조).

12)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법 제13조제1항).

13) 자원봉사자의 보호

가. 안전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법 제14조제1항),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에는 ①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②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그리고 ③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i) 가입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보험 또는 공제는 ①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②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14)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5조).

15) 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①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②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③ 그 밖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16)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가. 설립 및 업무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①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③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④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⑥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17조).

나. 조직과 운영

협의회의 회원은 ①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②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17)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8조).

18)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9조제3항).

자원봉사센터 장⁷⁾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7)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①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이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의 사업⁸⁾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⁹⁾

(1) 개 관

이 법은 6·25사변으로 국토의 태반이 전화를 입고 국가의 재정이 곤란하게 된 때에, 시국대책 또는 멸공구국운동 등의 미명하에 그동안 억제중에 있던 기부금품모집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각종세금의 증액, 국채소화의 강행, 인플레이 등으로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1951년 「기부통제법」(법률 제68호)을 폐지하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제정¹⁰⁾되었다.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은 ① 의뢰, 권유 기타의 방

8) 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①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②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③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④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⑤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⑥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⑦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①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③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④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⑤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⑥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

9) 최종개정 : 법률 제10346호, 2010.6.8(일부개정), 2010.9.9(시행)

10) 법률 제224호, 1951.11.17(제정), 1951.11.17(시행)

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 법에서 모집 금지하는 기부금품으로 하고(제2조), ②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으나 국제적인 구제금품, 천재·지변등의 구휼에 필요한 금품, 국방기재헌납을 위한 금품 등은 내무부장관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제3조), ③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모집자로 하여금 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검 기타 실지사무감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7조)이었다.

1995년 전부개정¹¹⁾에서는 법의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하였고, 기부금품모집허가 대상을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및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축소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2006년 일부개정¹²⁾에서는 ①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②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④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⑤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⑥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

11) 법률 제5126호, 1995.12.30(전부개정), 1996.7.1(시행)

1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908, 2006.3.24)

당할 수 있는 총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하는 모집비용 총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⑦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에 대한 규정이 제·개정되었다.

2008년의 일부개정¹³⁾에서는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 개정(제17조)이 있었다.

현행법은 2010년에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법 제7조 제2항 본문),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법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등록청은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도록 하며(법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기부금품의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법 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제16조제2항제4호 삭제)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목적(제1조), 용어 정의(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제4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제5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8조), 검사 등(제9조), 등록의 말소 등(제10조), 청문(제11조), 기부금품의 사용(제12조), 모집비용 총당비율(제13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제14조), 권한의 위임(제15조), 벌칙(제16조), 양벌규정(제17조), 과태료(제18조)에 관한 총 18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아래에서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3) 법률 제9194호, 2008.12.26(일부개정), 2008.12.26(시행)

(2) 주요내용

1) 목 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④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법 제2조제1호).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가. 등록청

1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¹⁴⁾를 작성하여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나. 등록대상사업

등록은 i)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ii)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14) 모집·사용계획서에는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따른 재해¹⁵⁾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iii)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그리고 iv)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①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④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⑤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⑦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⑧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법 제4조제2항).

다.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등록대상사업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결격사유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라. 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

5)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가.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5)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나. 국가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¹⁶⁾, ②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다. 국가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 보고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자발

16)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라. 기부심사위원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¹⁷⁾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며(법 제5조제3항),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조제4항).

6)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6조).

7)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모집 및 사용 결과의 공개 공지 등

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1항).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②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③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④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교정청을 말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나. 접수사실의 기재,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 공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법 제7조제2항).

다.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의 인계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3항).

8)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8조).

9) 장부 등의 검사 등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10) 등록의 말소 등

등록청은 모집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등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1항),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11) 청 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12)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①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②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항).

13)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¹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법 제13조).

18) ① 1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5% 이하, ②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3% 이하, ③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2% 이하, ④ 200억원 초과 : 모집금액의 10% 이하이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4)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¹⁹⁾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15) 벌칙과 양벌규정

가. 징역 또는 벌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조제1항).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조제2항).

19)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양벌규정

제16조의 징역 및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된다(법 제17조).

16) 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②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8조제1항).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²⁰⁾

(1) 개 관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²¹⁾되었다.

20) 최종개정 2011.4.28(일부개정), 법률 제10606호(2011.4.28. 시행)

21) 법률 제7918호, 2006.3.24(제정), 2006.9.25(시행)

그 후 두 번의 정부조직법의 개정²²⁾에 따른 주무부처명을 수정하는 두 번의 타법개정(2008년과 2010년)이 있었고, 2011년에는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관한 개정이 있었고, 2011년 개정법이 현행법이다. 현행법은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법의 목적(제1조), 용어 정의(제2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신고(제3조),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제4조),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제5조), 기부식품의 무상제공(제6조), 경비 일부 지원 등 국가 등의 지원(제7조), 민·형사상의 책임감면(제8조), 손해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제9조), 행정청의 지도·감독 등(제10조), 시정·사업 정지·사업장 폐쇄 명령(제11조), 벌칙·양벌규정·과태료(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법의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내용

1) 목 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식품” 등의 용어 정의

이 법에서 ①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²²⁾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하며(법 제2조제1호), ②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하며(법 제2조제2호), ③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3호), ④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

22)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하는 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4호), ⑤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²³⁾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3) 사업자 신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법 제3조제1항),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연히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당연신고사업자. 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또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제3항).

4)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

기부식품제공사업은 ①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②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③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법 제4조).

5)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가.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제공사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제1항).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23)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i) 장부 등 비치

사업자는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ii)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의 공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①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②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③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④ 기부식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²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6) 기부식품의 무상제공의 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²⁵⁾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6조제1항).

24) 이에 따라 현재 전국푸드뱅크의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서 각 지역 푸드뱅크의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5) ①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② 기부식품의 포장비용을 말한다(「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8) 민·형사상의 책임 감면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②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법 제8조제1항).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법 제8조제1항).

9) 손해보험 가입 등 기부식품이용자 보호

가. 신고 사업자의 손해보험가입의무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전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보험료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업자가 가입한 손해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9조 후단).

10)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②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법 제10조제1항).

11) 시정·사업의 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

가.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²⁶⁾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사업의 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법 제11조제2항 각 호²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11조제2항).

12)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식품 무상제공의 원칙이나 허용되는 직접경비 이상의 대가를 받고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26)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제1호)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제2호)이다.

2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제2호)이다.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12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3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단서).

그리고 특정 법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자²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14조제1항).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²⁹⁾

(1) 개 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도 증가하거나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종교, 언론과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자선, 장학등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면세조치, 공과금면제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설립자가 이를 사적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져 도리어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도 없지 않은 바, 민

28) ① 당연신고사업을 규정한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법 제14조제1항제1호), ②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과 기부식품의 안전 취급을 규정한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9) 최종개정 2011.3.7.(2011.9.8 시행), 법률 제10428호

법상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제, 감독관청에 의한 검사, 감독권, 설립허가의 취소등의 규제만으로서는 새로운 양상의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시키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공익법인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자치의 원칙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1975년에 제정³⁰⁾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우회적 상속의 여지를 축소하고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내용을 반영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청문절차를 신설하는 개정³¹⁾이 있었다. 즉, ①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제5조제5항), ②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며(제16조의2 신설), ③ 공익법인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제17조제2항 신설)이었다.

2004년 개정에서는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의 근거가 되는 규정(제14조제2항)이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됨에 따라,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회계 부정 등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한 때 등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제14조제2항의 개정이 있었다.³²⁾

30) 법률 제2814호, 1975.12.31(제정), 1976.4.1(시행)

31) 법률 제4932호, 1995.1.5.(일부개정), 1995.4.6.(시행)

32) 법률 제7228호, 2004.10.16(일부개정), 2004.10.16(시행)

현행법은 최근 2011년에 최종개정된 것으로, 2011년의 개정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³³⁾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있다(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법의 목적(제1조), 적용 범위(제2조), 공익법인 정관의 준칙 등(제3조),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제4조), 공익법인의 임원 등(제5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감사의 직무(제10조), 공익법인의 재산(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제12조), 해산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제13조),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제14조), 공익법인의 조세 감면 등(제15조), 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및 청문(제16조 및 제16조의2), 감사, 벌칙(제19조) 등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내용

1) 목 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하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2조).

3) 설립허가기준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4조제3항).

4) 임원 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법 제5조제5항),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법 제5조제2항), 감사는 이사와 제

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으며(법 제5조제8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법 제5조제9항).

5) 재 산

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법 제11조제1항). 기본재산은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나. 기본재산의 정관에의 기재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법 제11조제2항).

다.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³⁴⁾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법 제11조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고는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이러한 신고제도의 도입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 재산의 관리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4항).

6) 예산 및 결산 등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법 제12조제1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34)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제2항).

7)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법 제13조).

8) 감 독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그 내용으로는 ①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② 공익법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 즉,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이 i)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ii)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iii)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i)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또는 ii)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법 제15조).

10) 설립허가의 취소 및 청문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ii)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iii)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iv)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v)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vi)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vii)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그러나 이러한 공익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법 제16조제2항).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

11) 감사 등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항).

12) 벌 칙

① 법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제1항).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제2항).

③ 이사나 감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법 제19조제3항).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³⁵⁾

(1) 개 관

이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0년에 제정³⁶⁾되었다. 총 13개 조로 구성되며, 용어 정의(제2조), 기본방향(제3조), 등록(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5조), 보조금의 지원(제6조), 지원사업의 선정등(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제8조), 사업보고서 제출(제9조), 조세감면(제10조), 우편요금의 지원(제11조), 보조금의 환수등(제12조), 벌칙(제1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35) 최종개정 : 법률 제8852호, 2008.2.29.(타법개정), 2008.2.29(시행)

36) 법률 제6118호, 2000.1.12.(제정), 2000.4.13(시행)

(2) 주요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2)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3) 등록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

4) 보조금의 지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법 제6조).

5)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보조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³⁷⁾

(1) 개 관

이 법은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³⁸⁾되었다. 1999년에 법률 전부개정³⁹⁾이 있었고 2001년 일부개정법률⁴⁰⁾에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했으며(제18조의2 신설), 2008년 일부개정법률⁴¹⁾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최근에 현행법인 2012년 일부개정법률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7.1. 시행) 취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12.27. 공포, 2012.7.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12.21. 공포, 2008.6.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본

37) 최종개정: 법률 제11518호, 2012.10.22, 일부개정(시행 2012.10.22)

38) 법률 제5317호, 1997.3.27. 제정(시행 1998.7.1)

39) 법률 제5960호, 1999.3.31, 전부개정

40) 법률 제6486호, 2001.5.24, 일부개정

41) 법률 제8938호, 2008.3.21, 일부개정

질적인 내용 변동은 없이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맞춤법, 문장체계의 간결화, 명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총 37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정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업, 정관, 임원, 이사회, 사무조직, 분과실행위원회, 지회, 조직·운영 등,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재원, 기부금품의 모집, 복권의 발행, 모금창구의 지정, 배분자의 표시, 배분신청 및 심사 등,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배분사업의 평가, 배분결과의 공고 등, 재원의 사용 등, 사업계획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회계연도, 지도·감독등, 시정명령 등, 보조금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내용

1) 목 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에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정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3) 기본원칙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해서는 안되며,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

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조).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두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4조).

5) 모금회의 사업

모금회는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②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③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④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⑤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⑥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⑦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⑧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5조).

6) 이사회, 임원 및 사무조직 등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법 제8조제1항).

모금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법 제7조).

모금회에는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법 제12조)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법 제14조).

7) 분과실행위원회의 설치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법 제13조제1항).

8)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⁴²⁾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⁴³⁾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6조의2).

9) 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③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⁴⁴⁾,

42)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법인의 기본재산은 ① 부동산, ②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43)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44)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④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④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법 제17조).

10)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1) 복권의 발행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3항).

12) 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법 제19조).

기금, ⑥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⑦ 지방자치단체,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⑪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금 등에 배분하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13) 기부금품 등의 배분

가. 배분공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법 제20조제1항).

나. 배분신청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배분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다. 배분신청의 심사 및 배분계획의 수립

모금회는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며,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라. 배분사업의 평가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의2제1항).

마. 배분결과의 공고 등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24조).

14) 재원의 사용 등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며,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15)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27조제1항).

모금회는 기부자의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모금회는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16)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17)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 국가 등의 보조금 지원 및 반환 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①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1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3조).

8. 신탁법⁴⁵⁾

(1) 개 관

이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타법 개정으로 이어져 오다가, 2011년에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 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전부개정이 있었고, 개정법률은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2011년 전부개정법률은 총 12장 147개 조로 이루어지고, 제10장에서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장에서는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45) 법률 제10924호, 2011.7.25(전부개정), 2012.7.26(시행)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으로 하고,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신탁법 중에서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내용

1) 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으로 한다(106조).

2) 공익신탁의 허가 및 감독

수탁자는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107조), 공익신탁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법 제108조).

3) 공익신탁의 변경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이외의 신탁의 변경,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09조제2항).

4) 수탁자의 사임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법 제110조).

5) 제111조(검사·보고)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익신탁 사무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

6) 주무관청의 권한

주무관청은 ①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이나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을 직원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 제112조제2항).

7) 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법 제113조)

9. 조세관계법

조세관계법에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나눔행위에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종전 법정·특례·지정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 구분체계로 간소화 하고, 특례기부금을 폐지하여 법정기부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기부금 구분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부금 단체 간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법정·일반 기부금 구분체계로 간소화 한 것이다. 종전의

특례기부금 단체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다. 예컨대, 조세특례법 제73조에서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있던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에 대한 교육비·연구비 등은 조세특례법 제73조의 삭제로 법정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

기부금별 필요경비 산입 및 손금 산입 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다,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이고,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였던 것을 특례기부금을 없애는 대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개인은 30%, 법인은 10%로 높였다.

〈표 9〉 기부금 세제 개요

종 류	손금한도		이월공제		관련조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 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법정 기부금 (50%)	법정 기부금 (100%)	1년	1년	법인세법 §24 ②항 제1~제4호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대한적십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인세법 §24 ②항 제5호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 기부금 (10%)	지정 기부금 (30%)	5년		법인세법 §24 ①항

종 류	손금한도		이월공제		관련조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법정 기부금 (50%)	법정 기부금 (100%)	1년		소득세법 §34 ②항
대학기부금			1년		조특법 §73 삭제 법인세법 §24 ②항
사내근로복지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전문생산기술연구소·한국과학창의재단·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산업안전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빈곤층아동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국민신탁법인, 박물관·미술관, 국제행사조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지정 기부금 (10%)	지정 기부금 (30%)	5년		법인세법 §24 ①항
국립암센터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법정 기부금 (50%)	법정 기부금 (100%)	1년		법인세법 §24 ②항 5호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종 류	손금한도		이월공제		관련조문
	법 인	개 인	법 인	개 인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학교·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특정 용도 지출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공익신탁기부금,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 기부금 (10%)	지정 기부금 (30%) 단, 종교 단체 (10%)	5년 (공익신탁 기부금 3년)		법인세법 §24 ①항 시행령 §36 ①항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비					

1)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인 ①「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에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2) 법인세법

가. 비영리법인의 정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법 제1조제2호).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법 제20조제1항).

나. 기부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과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그리고 비영리교육재단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과 같은 제24조2항의 법정기부금은 일정비율을 손금으로 산입한다(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⁴⁶⁾

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상속재산 중 상속

46) 최종개정 : 법률 제10366호, 2010.6.10(타법개정), 2012.6.11(시행)

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법 제12조제1호, 제6호 및 제7호),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7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16조제1항).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개정 2011.7.25, 시행 2012.7.26.)

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법 제46조), 그리고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제7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법 제48조제1항).

6)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 제52조 : 개정 2011.7.25, 시행 2012.7.26).

제 4 절 소 결

나눔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눔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종교단체, 법인·정당·사회단체 등이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조세관계법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법정·지정)를 열거하고 있다. 그 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해서도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의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게 하여 관리하고 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행안부)).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단체의 설립 및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다.

기부금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의무부과 관련 규정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i)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부자(개인, 법인)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은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를 소득공제하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개인은 30%(종교단체에의 기부는 10%), 법인은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ii) 기부받는 경우에 기부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동일법인 주식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이처럼 현행 나눔 관련 법 규정들이 다양한 나눔의 형태별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다양하게 산재해 있어서 나눔의 통합적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법체계라 할 수 있다.

나눔 단체 및 기관과 관련된 법규정이 각기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 재량에 따라 운영됨으로서 나눔 단체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요컨대 공익법인 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규정의 경우를 보면, 일관되지 못한 각 부처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규정과 목적의 중첩 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의 나눔문화 확산 관련 법제

제1절 미국

1. 개 관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 문화가 발달해 있는 국가라면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기부문화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존속해왔고, 봉건적 계급 제도 없이 만인이 평등한 민주국가로 시작한 미국에서 기부란 특정 계급인 귀족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책무로 형성되어 왔다.⁴⁷⁾

이러한 기부문화의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기부에 의해서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의 나눔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재산의 기부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가 만들어졌고, 역대 행정부는 국내 외의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제를 마련해 왔다.⁴⁸⁾ 또한, 연방세법상 규정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그리고 기부받은 단체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에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사마리아인의 식품 기부법(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 of 1996)⁴⁹⁾과 식품기부법(Food Donation Act of 2008)⁵⁰⁾을 제정한 바 있고,⁵¹⁾ 생명 나눔에 해당하는 장기 기증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47) 예종석,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나눔문화의 정착방안, CEO Report No.12, 경기개발연구원, 2010, 7쪽.

48) 자세한 내용은 엄철현, 미국 역대 행정부의 자원봉사법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 교육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09, 119-139쪽 참조.

49) Pub. L. 104-210.

50) Pub. L. 110-247.

51) 자세한 내용은 김세진,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2008), 해외법제뉴스, 법제처, 2009, 98-103쪽 참조.

이하에서는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변천과정과 기부행위에 대한 세금 혜택을 규정한 연방 소득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원봉사관련 법제 현황

(1) 개 관

자원봉사는 국가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의 건전한 욕구로 승화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초창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민간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공황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업구제와 사회통합차원에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⁵²⁾

연방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장려, 지원에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구체적 토대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케네디 행정부에서 입안한 평화봉사단법(Peace Corps Act, 1961)이다.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1973),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전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신탁기금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1993), 최근의 에드워드 M. 케네디 미국 봉사법(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 2009)까지 자원봉사단체, 관리 기구, 활동 영역 등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2) 평화봉사단법(Peace Corps Act of 1961)

1)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봉사단 창설

1961년에 집권한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런티어 개척정신을 제창하면서 행정명령 10924호에 따라 국무성 내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52)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2008, 129-130쪽.

을 창설했다.⁵³⁾ 평화봉사단은 미국에서 교육, 훈련받은 젊은이들을 후진국, 개도국에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교육, 경제,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국가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봉사단체이다.

출범 이후 50년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139개국에서 21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77개국에서 8,675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다.⁵⁴⁾

이들은 개도국에서 의료·교육·영농·에이즈 예방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며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평화봉사단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961년에 의회를 통과한 ‘평화봉사단법(Peace Corps Act)⁵⁵⁾은 연방법전 제22편(외교 및 상호관계)의 제34장(평화봉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23개의 조문(22 U.S.C. 2501-22 U.S.C. 2523)으로 되어 있다.

가. 목 적

동법은 평화봉사단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고, 개도국, 후진국 등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지원하며, 그 국가의 미국민에 대한 이해 및 미국의 그 국가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⁵⁶⁾

나. 조직 구성

대통령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평화봉사단장 및 부단장을 선출하고, 미국

53) http://en.wikipedia.org/wiki/Peace_Corps#1950.E2.80.931959

54) <http://www.peacecorps.gov/about/history/>

55) Pub. L. 87-293.

56) 22 USC Sec. 2501.

의 외교정책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⁵⁷⁾

동법은 또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화봉사단 국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여기에는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동 자문위원회는 평화봉사단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자문, 조언하고 감독을 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에게 평화봉사단의 역할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자원봉사자에게는 생활비, 여행, 주택 및 기타 경비가 제공되고, 국내 귀환 후에 매달 수당을 수령하면서 직업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⁵⁹⁾

3) 존슨 행정부의 VISTA 창설

존슨 대통령은 ‘가난과의 전쟁’을 기치로 내걸고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1964년에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ies Act)에 근거하여 1965년 미국 자원봉사단(Volunteer in Service to America, 이하 VISTA)을 창설하여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⁶⁰⁾ 즉, 평화봉사단은 국제적 차원의 봉사기구로서 역할을 하였고, VISTA는 국내적 차원의 봉사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VISTA는 이후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Americorps VISTA(미국봉사단)으로 흡수, 운영되고 있다.

57) 22 USC Sec. 2503.

58) 22 USC Sec. 2511.

59) 22 USC Sec. 2504.

60) 염철현, 앞의 글, 122쪽.

(3) 국내 자원봉사활동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of 1973)

1) 닉슨 대통령의 ACTION 창설

1969년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외로 분리, 운영되어 온 자원봉사를 연방정부의 공공기관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여 자원봉사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⁶¹⁾

또한 ‘백악관 자원봉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회봉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실시하여, 전국 차원에서 민간 운영하는 자원봉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기구로서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Center of Volunteer Action: NCVA)’를 설립했다. 이것은 이후에 다른 민간 조직을 흡수하여 1979년 볼런티어(VOLUNTEER), 1991년 촛불재단(Point of Light Foundation)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 ACTION이라는 독립기구를 조직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조직화하였다. ACTION은 당시 정부에서 3개 부서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던 7개의 연방 프로그램인 평화봉사단(Peace Corps), 빈곤퇴치자원봉사단(VISTA), 은퇴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 대리조부모봉사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FGP), 은퇴경영자봉사단(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 SCORE), 현역경영자봉사단(Active Corps of Executive: ACE), 전국학생봉사프로그램(National Student Volunteer Program)을 연방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구였다.

2) 국내 자원봉사활동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닉슨 대통령은 1973년 국내 자원봉사활동법의 제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였고, ACTION과 7개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합법화하였다.⁶²⁾

61) 염철현, 앞의 글, 123쪽.

가. 목 적

동법은 연방법전 제42편 제66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활동을 통해서 국가차원에서 공동체에 자원봉사를 육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⁶³⁾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는 이 장에 근거하여 수립된 각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방, 주 및 지방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미국인들의 에너지, 개척 정신, 경험 및 스킬을 활용하도록 했다.⁶⁴⁾

나. 주요내용

동법은 VISTA의 요건, 목적, 재정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검증과 발전을 확대, 보건 서비스, 주택, 환경, 교육 개발, 인력, 지역 계획 등이 VISTA 활동의 주요 영역임을 확인했다.⁶⁵⁾

동법에 있어서 혁신적 조항들 중 하나는 대학에 VISTA를 위한 과정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빈곤구제 프로젝트 및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퇴역 군인이나 약물 중독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카운슬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⁶⁶⁾

또한, 동법은 RSVP와 FGP를 신설하여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SCORE와 ACE를 규정하여 은퇴 경영자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62) 박민서, 선진국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복지사회연구 제2집, 목포대학교, 2000, 192-193쪽.

63) 42 USC Sec. 4950(b).

64) 42 USC Sec. 4950(b).

65) 42 USC Part A -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66) 42 USC Part B - University Year for VISTA

3) 이후 경과

국내자원봉사활동법은 1973년 이후로 수차례 개정되어, 1980년대 VISTA는 해외로의 자원봉사활동에의 비중을 줄이고, 국내적 자원봉사 활동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1986년에는 성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VISTA의 문맹퇴치단 및 문맹퇴치위원회를 창설하여 전국적으로 문맹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에 VISTA는 조지 부시가 국가 및 지역공동체 자원봉사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빈곤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 자원봉사활동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4)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법 (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of 1990)

1) 레이건 대통령의 신연방주의

1970년에 설립된 전국자원봉사센터(NCVA)가 NICV(National Information Center on Volunteerism)을 통합하여 1979년에 볼런티어(VOLUNTEER)로 개편되었고, 1990년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Volunteer Center)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91년에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이 창설되면서 통합되었다.⁶⁷⁾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민주당의 카터 행정부 집권 4년을 제외하고, 미국 사회는 장기간 공화당 주도의 보수적 사회로 회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방식에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또는 민간 차원으로 대폭 이양하는 경향이 있었다.

67) 김동배, 앞의 글, 128-131쪽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누적과 국제사회의 냉전체제로 인해 발생한 국방비의 대폭 지출, 무역수지 적자, 연방의 재정적자라는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⁶⁸⁾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에 연방정부가 부담했던 사회복지 비용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주 및 지방, 그리고 민간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었다.

연방정부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줄이는 대신,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 및 보상체계를 변경하였다.

2)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부시 대통령은 1990년 5월에 지역 회원과 기업자원봉사협의회(Corporate Volunteer Council)와 전국자원봉사센터(National Volunteer Center)를 합병하여 촛불재단(Point of Light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촛불 재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이다.

촛불 재단은 자원봉사에 대한 공공의 인식 증대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행사 수행, 500개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들과 협력하고 지원하여

68) 연방제도의 성격에 관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에 관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신연방주의란 닉슨의 공화당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레이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표현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에서 견지되어 온 연방 정부의 정책 주도권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주도권을 이양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출현은 미국 국가예산의 막대한 낭비,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부조리에서 탈피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의존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연방제의 재해석을 의미한다 -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 박문사, 2001, 73쪽

자원봉사센터들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지원, 기업과 정부에 속한 피고용자들의 지역사회 봉사 노력을 장려하고 필요한 훈련 및 기술지원과 정보 제공,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0년에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of 1990)을 제정하여, 신연방주의를 토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 역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에 대한 보조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프로그램과 청년과 고령자를 포함하는 시간제 및 전일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원봉사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 육성 기금을 보조한다.

(5) 전국 및 지역 사회봉사 신탁기금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of 1993)

1) 전국 및 지역 사회봉사 신탁기금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1993년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역적자와 연방의 재정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0년에 제정된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을 개정하여 1993년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 신탁기금법’을 새로 제정하고, 자원봉사를 담당할 기구로서 ‘미국 봉사단(AmeriCorps)’을 조직했다.

미국봉사단은 공공안전, 교육, 대인봉사, 환경 등 지역사회 봉사 분야에 참여하여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함양하고 참여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정부가 이 봉사단의 운영을 위한 지원금 중 2/3을 지원, 관리한다.

미국봉사단을 관리·운영하는 총괄기구로서 기존의 ACTION을 대신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⁶⁹⁾를 창설했다.

미국봉사단은 주 및 전국단위 봉사단(AmeriCorps State & National), 빈곤 퇴치 봉사단(AmeriCorps VISTA), 민간공동체 봉사단(AmeriCorps NCCC)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주 및 전국단위 봉사단(AmeriCorps State & National)

방과후 수업과 주택건설과 같은 직접적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교육기금(Education Award)을 받을 수 있다.

11개월 이상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1,700시간을 봉사한 참가자에게는 생활비와 건강보험, 아동양육수당까지 지급한다.

나. 빈곤퇴치 봉사단(AmeriCorps VISTA)

이것은 VISTA와 AmeriCorps가 통합된 것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중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 시행하고 있다. Head Start, Upward Bound, Credit Union System과 같은 프로그램이

69) <http://www.nationalservice.gov/>

In 1993,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was established. The Corporation was created to connect Americans of all ages and backgrounds with opportunities to give back to their communities and their nation. It merged the work and staffs of two predecessor agencies, ACTION and the 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t its inception, the Corporation was directed to manage three main programs:

The newly created Senior Corps, which incorporated the longstanding Foster Grandparents, RSVP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and Senior Companion programs;

The newly created AmeriCorps, which incorporated the longstanding VISTA, the new 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programs, and the full-time demonstration program that had been established under the 1990 Act; and Learn and Serve America, formerly known as Serve America.

The Corporation is part of our nation's history of commitment to building a culture of citizenship, service, and responsibility. View a more detailed history of the federal government efforts to support volunteering and community service.

VISTA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조받고, 의료 보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봉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교육기금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다. 민간공동체 봉사단(AmeriCorps NCCC)

봉사자들이 캠퍼스에 거주하면서 팀제의 전일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로 지역사회에 당면한 문제들, 환경, 교육, 공공안전, 주택 안전, 재난 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10개월 동안 4000달러의 생활비와 400달러의 양육수당과 주택, 식사, 제한적 의료혜택, 유니폼을 제공받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을 때 교육기금을 받는다.

미국 봉사단은 혁신적인 국가봉사 프로그램으로서 위상을 갖추면서, 전국적 봉사활동기구로서 초석을 다졌고, 기존의 Boys and Girls Club Big Brothers and Big Sisters,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와 같은 단체에게 재원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⁷⁰⁾

(6) 국가봉사법(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 of 2009)

1) 국가봉사법의 제정 배경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차별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70) 염철현, 앞의 글, 129-130쪽

이에 따라, 2009년 4월 21일 에드워드 M. 케네디 국가봉사법⁷¹⁾에 서명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시켰다.

2) 국가봉사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가. 의 의

동법은 국가 및 지역사회 공사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 봉사 프로그램을 재수권 및 확대하는 것으로서 1990년의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과 1973년의 국내 자원봉사활동법을 수정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동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를 7만5천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도 향후 5년간 5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미국 봉사단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자원봉사 활동 분야도 ‘공교육 봉사’, ‘빈민 구조’, ‘환경’ 분야에서 ‘교육과 건강’, ‘청정 에너지’, ‘전역 장병’ 분야로 다각화하고, 장애인과 빈곤층 건강 증진, 자원절약과 보존,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9.11. 테러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원봉사정신을 기념하고자 매년 9월 11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했다.

71) On April 21, 2009, President Barack Obama signed the 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 at an elementary school in Washington, DC (read more). The Serve America Act reauthorizes and expands national service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he Serve America Act, S. 277, legislation to reauthorize and strengthen the national service laws, was introduced by Senators Kennedy and Hatch on January 16, 2009. On March 26, 2009, the Senate voted 79-19 to pass national service reauthorization legislation, naming the bill the 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 The Generations Invigorating Volunteering and Education (GIVE) Act, H.R. 1388, a bipartisan reauthorization bill, was introduced on March 10, 2009. On March 11, 2009, the 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approved the GIVE Act by a vote of 34-3.

중·고교생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완수하면, 대학 진학시 500달러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할 경우, 최대 535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되고, 대학 측에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도우면 해당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Silver Scholarship 혹은 Encore Fellowship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Silver Scholarship은 350시간 봉사를 할 경우 1000달러 지원하고, 1년 또는 전일제로 봉사할 경우 최대 5350달러를 지원한다. Encore Fellowship은 공공 또는 사립 비영리기관에서 1년 동안 관리직 또는 리더의 지위에서 근무하면서 제2의 혹은 제3의 인생 설계를 위한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3.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법제 현황

(1) 개 관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 및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세제 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기부를 하는 자에 대한 소득 공제와 기부를 받는 단체에 대한 세금 공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1) 연방세법상 기본 원칙

기부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연방 증여세 및 유증세(federal estate tax)에 대해 이루어진다.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170(a)에 따르면, 적격 수령자(Qualified Donee)에게 자선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는 조정 총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C §170(c)에는 적격 수령자, 즉 기부를 받는 단체의 요건이 다음의 5가지로 규정되어 있다.⁷²⁾

① 미국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정부(연방, 주, 정부 소유지, 콜럼비아 자치구)의 법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서,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 아동이나 동물 학대 방지,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을 위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 ② 퇴역군인 단체, ③ 숙박 시설 등을 운영하는 친족, 연합 단체, ④ 비영리 장묘단체, 그리고 ⑤ 미국 정부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하 단체일 것이다.

이것은 기부금을 수령하는 비영리단체가 면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IRC §501(c)(3))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2)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공제

가. 개인 기부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 현물자산 등)과 기부를 받는 단체의 연방세법상 분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⁷³⁾

72) 이은미,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2009.1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397쪽

73) 김진수 외,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37-38쪽.

① 현금 기부 : 조정 후 총소득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액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민간 재단 중 비사업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에 기부할 경우에는 조정 후 총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② 자본이득 기부 : 공익자선단체, 민간사업재단, 민간비사업재단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에 자본이득을 기부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조정 후 총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 외에 면세단체에 자본이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 후 총소득의 20%까지 공제 가능하다.

③ 용역 기부 :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용역 제공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비용인 운전 중 주유비, 주차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

나. 법인 기부

개인기부와 달리, 기부 자산의 성질이나 기부받는 단체의 연방세법상 분류에 따른 한도 규정이 없다. 기업이나 재단 등이 IRC §170(c)의 단체(미국 정부 관련 기관, 교회나 교회단체, 교육기관, 의료연구기관 등)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⁷⁴⁾

3) 연방 증여세(federal gift tax) 및 유증세(federal estate tax) 공제

생전에 대가 없이 현금 또는 물품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시 양도하면 유증세가 부과된다.

가. 과세 대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자이고, 유증세의 과세대상은 유산 자산이다. 증여받는 사람이나 상속인에게 증여세와 유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⁷⁴⁾ 김진수, 앞의 글, 44쪽.

이들의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세제 혜택

1년에 1인당 13,000달러의 학비 또는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한 증여⁷⁵⁾, 연금권리의 포기를 위한 증여⁷⁶⁾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 IRC §501(c)(3) 상 면세단체에 대한 증여는 공제 대상에 속한다.⁷⁷⁾

IRC §501(c)(3)상 면세단체에 기부된 유산도 유증세에서 공제된다.⁷⁸⁾

다. 세율

증여세와 유증세는 단일 세율로, 평생 동안 증여에 의해 양도된 재산 총액과 사망에 따른 유산 총액이 모두 합쳐져서 일률적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그 금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만 이것이 적용되므로, 수혜자가 그리 많지 않다.

(3) 비영리 단체에 대한 연방세 혜택

면세의 대상이 되는 연방세는 연방소득세와 연방실업세이다.

면세 지위를 얻은 비영리단체 중 일부만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고,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면세 혜택을 줄 것인지 판단한다.⁷⁹⁾

75) IRC §2503(e)

76) IRC §2503(f)

77) Reg. §25. 2522(a)-1(a)

78) IRC §2055(a)

79) 허은영,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93쪽.

1) 연방세법상 면세 요건

가. 면세 지위

면세 해당 단체는 법인(corporation), 금고(communit y chest), 기금(fund), 혹은 재단(foundation)이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협회와 신탁도 기금이나 재단의 자격으로 면세의 지위를 얻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면세지위를 얻을 수 없다.⁸⁰⁾

나. 조직 심사

법인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내규(bylaws)를 두어야 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이 IRC §501(c)(3)에서 규정하는 설립 목적에 해당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⁸¹⁾

면세 지위를 얻은 단체의 자산은 해당 면세 목적에 영원히 헌납되어야 하고, 단체가 청산하더라도 자산을 기증자, 이사, 기관 구성원 등에게 되돌리지 않고, 정관에 명시된 면세목적에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면세단체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한다.⁸²⁾

다. 운영 심사

① 지출의 공익성 : 순이익이 주주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정치적 활동 제한 : IRC §501(c)(3)상 면세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단체의 주요활동이 입법에 미치는 어떠한 로비활동이어서도 안되며, 공직의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기관이어야 한다.

80) 허은영, 앞의 글, 93쪽.

81) 허은영, 앞의 글, 94쪽.

82) 허은영, 앞의 글, 94쪽.

라. 민간 재단(Private Foundation) 여부

① IRC 501(c)(3)상 면세지위를 신청할 때 해당 단체가 민간 재단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② 민간 재단의 기준

- a. 후원유인능력 테스트 : 일정규모 이상을 대중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한정된 사람들로부터만 후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익적인 성격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 b. 지출의 공익성 테스트 : 후원유인능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만 교부하는 재단이 아니라 면세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으로 인정받으면 민간재단에 부여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
- c. 사업 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정 순소득(adjusted net income) 과 최소투자수익(minimum investment rate) 중 적은 금액의 85% 이상을 면세목적에 지출해야 한다.
- d. 이 외에도 자산테스트, 투자 테스트, 지원 테스트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③ 민간재단 중 비사업재단으로 판명되면 일반적인 IRC §501(c)(3) 상 면세단체보다 혜택이 적어지고 가산세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마. 면세 지위 유지를 위한 요건

연간 25,000달러 이상의 총수입이 있는 단체는 매년 국세청에 규정된 양식(IRS Form 990과 990-T)으로 단체의 재정 상태와 활동상황 등을 보고하여 면세 지위에 합당한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연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4. 정리 및 시사점

미국의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정당이나 당파를 떠나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대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집권당이 공화당/민주당인가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성격 규정과 활동 지원 내용 및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침체기나 외국과의 전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기, 그리고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자원봉사를 장려, 확대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원봉사를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보지만,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민간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활동 영역이 빈곤퇴치, 교육, 환경, 지역 개발, 보건 등 다각화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주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자원봉사는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수단이자, 나아가 국가통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개인의 기부가 전체 기부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의 기부금이 미국의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통해 기부행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자선단체들이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세법상 면세 또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민간단체들 스스로가 단체의 운영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⁸³⁾

83) 허은영,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

민간단체인 ‘가이드스타 US’는 비영리단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990양식(FORM 990)과 연차보고서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들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이 손쉽게 비영리단체들의 운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펀드레이징 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등 비영리 분야의 협회들은 기부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선언문(기부자의 권리장전(The Donor Bill of Rights))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부자는 수혜기관의 미션, 기부금 사용 방식, 최적 운용 능력, 수혜기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알 권리, 최신 재무제표를 열람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기부를 접수하였음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운용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킴으로써 기부문화 정착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제 2 절 독 일

1. 개 관

독일에서의 시민적 나눔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나눔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이지만, 독일의 독특한 나눔 형태로 순수 자원봉사와 임금근로의 성격을 내포하는 명예직 제도(Ehrenamt)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시민적 나눔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는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r weiteren Stärkung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 BüEnStG)⁸⁴⁾을 들 수 있다.

광연구원, 2009, 90쪽 참조.

을 토대로 하여 독일의 시민적 나눔에 대하여 기부, 자원봉사 및 명예직 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세제지원에 관한 세법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 현황

(1)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

독일에서 나눔, 예컨대 공익적 활동(gemeinnützige Tätigkeit)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r weiteren Stärkung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 BüEnStG)⁸⁴⁾이 있다.⁸⁵⁾ 동법은 2007년 10월 10일에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부자를 위한 세제감면에 관한 것이며,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소득세법」(Einkommenssteuergesetz), 「법인세법」(Körperschaftssteuergesetz) 등 일련의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관료적 장애의 제거를 통해 공익법과 기부금법이 보다 단순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화됨은 물론 시민적 나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2) 기부의 개념 및 의의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에 따른 “기부(Spenden)”는 반대급부 없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한 자유로운 지출을 의미하는 출연(Zuwendung)과 연결된다. 이러한 출연은 「소득세법」(Einkommenssteuergesetz, EStG) 제10b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 외에 회비(특정된 법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출연은 기부와 회비에 대한 상위개념이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용어인 기부로 표현된다.

84) BGBl. I S. 2332.

85) BGBl. I S. 2332.

이러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에서는 특별소비(지출)로, 「법인세법」(Körperschaftsteuergesetz)에서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기부에 대한 현행법상의 세제감면은 공익적 목적이나 자선적 목적을 구별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52조제2항에서 열거하는 세제혜택이 있는 기부행위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gemeinnützige Zweck)이 자선적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공공성(Allgemeinheit)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 기부의 특징

대표적인 기부의 특징으로 자율성, 무보수성과 비용효과를 들 수 있다. 우선 “자율성(Freiwilligkeit)”은 급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을 것을 의미하며, “무보수성(Unentgeltlichkeit)”은 기부자의 출연이 계약상 혹은 그 밖의 기부금수령자의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금전성이 있는 후원(Sponsoring)은 기부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취급된다.

그리고 금전감소를 의미하는 비용효과(Ausgabewirksamkeit)는 기부자의 금전가치 있는 재산에서 가치양도(Wertabgaben)가 은혜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화폐유통 및 물품의 교부는 물론 “비용기부(Aufwandspenden)”에 해당하는 출연도 여기에 포함된다.⁸⁶⁾

(4) 기부의 종류

독일에서 기부는 금전기부, 물품기부와 비용기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금전기부”는 현금, 수표 또는 송금으로 실행될 수 있으나 기부금 자체는 기부금수령자에 의해 직접 수령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86) Erzbischöfliches Ordinariat Berlin (Hrsg.), Neuregelung des Spendenrechts, 2008, S. 5-6.

기부금이 수령하는 단체의 재산으로 직접 유입되고 등록되어야 한다. “물품기부”는 개인의 물품기부나 기업의 생산품 기부로 구분될 수 있고, “비용기부”는 배상의 포기로서 기부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약상 혹은 법적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기부금수령자의 조건

독일 「소득세시행령」(EStDV)에 따르면 출연금수령자를 ① 공법상의 법인이나 공공기관, ② 「법인세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열거된 단체로 보고 있으며, 사단이나 재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49조제1호 및 제2호). 물론 교회도 공법상 법인이며, 재무행정기관을 통해 기부금수령자로서 특별한 인증 없이도 출연을 받을 수 있고 확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세제혜택

1) 출연(기부)증서의 제시

출연증서는 기부금의 세금공제를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출연증서는 수령단체, 예컨대 교회가 출연액과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명 ‘간이기부금증서’(Vereinfachter Spendennachweis)가 있는데, 이는 출연증서의 공적 표준을 대신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교부된다. 간이기부금증서의 상한은 기존의 1인당 100유로에서 200유로로 증액되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기부금이 2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은행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⁸⁷⁾

2) 세금공제범위와 기간

가. 개 관

기부금공제에 대한 상한이 기존에는 목적에 따라 5%(교회, 종교적, 스포츠를 비롯한 특별히 지원가치가 있는 공익적 목적)와 10%(학술적, 자선적, 문화적 목적)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공제상한이 통일적으로 전체 소득액의 20%에 이른다. 또한 기업이 기부하거나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 전체 매상액의 2/1000에서 4/1000까지 확대하였으며, 한 해에 지출된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비용으로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소득세법 제10b조 제1항). 한편 기부금공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 가능하며, 현재는 10년 후에도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재단자본금에의 기부상한

독일에서 재단은 그 기능에 따라 후원재단(Förderungsstiftungen), 활동재단(Operative Stiftungen), 잠정적인 소비재단(Verbrauchsstiftunge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재단들은 공익적, 자선적, 종교적 목적의 재단일 경우 대부분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단에 대한 출연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적인 최고율 외에 추가적으로 20,450 유로의 특별한 공제액이 청구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공제액이 종종 남용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그리고 재단의 자본금에의 기부/출연을 위한 공제기준이 기존 307,000유로에서 750,000유로까지 증액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특별공제액을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면 100만 유로까지 증가된 셈이다(소득세법 제10b조 제1a항).

87) Ibid, S. 10.

따라서 재단자본금에의 기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0회까지 연속된 사정기간으로 분할하여 소득공제될 수 있으며, 추가로 매년 소득의 20%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기존의 재단자본금에의 기부는 재단의 신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혜택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장기간 존속해 온 재단에의 출연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공익재단에의 기부는 상속세법(Erbbschaftsteuergesetz)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b문).

3. 자원봉사제관련 법제현황

독일에 있어서 시민적 나눔으로서의 자원봉사(Freiwilliges Engagement, Freiwilligenarbeit)는 연방차원에서 조직되고 지원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방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원봉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에 새로 구성된 연방자원봉사제도(Bundesfreiwilligendienst, BFD)는 남녀노소 전 세대에 걸친 사회적, 생태적 분야에서의 복지지향적인 활동을 제공함은 물론 스포츠, 사회통합, 문화, 교육, 시민보호나 재해대책(예방) 분야에서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공동의 과제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방 자원봉사제도의 법적 근거는 「연방자원봉사법」(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 : BFDG)⁸⁸⁾과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Das Gesetz zur Förderung von Jugendfreiwilligendiensten:JFDG)⁸⁹⁾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명예직활동에 대

88) BGBl. I S. 687 ff..

89) BGBl. I S. 2854.

하여 소득세법에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1) 연방자원봉사법

1) 개 관

연방자원봉사법(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 BFDG)⁹⁰⁾은 자유롭고 공익적이며 비금전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 4월 28일에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른 연방자원봉사제도 병역의무(Wehrpflicht)와 공익근무(Zivildienst)의 연기에 대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자원봉사제도인 사회적 자원봉사해(Freiwillige Soziale Jahr, FSJ)와 생태적 자원봉사해(Freiwillige Ökologische Jahr, FÖJ)를 보충하고 시민적 나눔을 지원한다. 또한 27세 이상의 성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개념을 넓은 사회적 토대에서 설정하고 있다.

연방자원봉사제도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중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운영의 중심기관은 연방가족시민사회과제청(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 BAFzA)이다.

2) 주요내용

연방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남녀는 특히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 및 생태계, 사회통합, 재난보호 관련 영역에서 공공복리(Allgemeinwohl)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연방자원봉사는 평생학습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방자원봉사법 제1조).

연방자원봉사는 연방자원봉사법(BFDG)에 근거하여 의무교육기간을 마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연령의 제한 없이 적용된다(동법 제2조). 자원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며,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까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27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는 주당 20시간 이상의

90) Gesetz über den Bundesfreiwilligendienst; BGBl. I S. 687 ff..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동법 제2조 및 제3조).

이러한 연방자원봉사는 공익근무(Zivildienst)처럼 노동시장에 대해 중립적이며, 정규 노동력을 위협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원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근무자들의 위치와 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은 물론 숙박, 급식, 의복 및 용돈이 지급된다(동법 제17조). 그 밖에 자원봉사에는 사회적, 문화적, 간문화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세미나가 수반되고 있다(동법 제4조).

(2)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은 시민적 나눔의 특별한 형태로서 사회적 자원봉사의 해(Freiwillige Soziale Jahr, FSJ)와 생태적 자원봉사의 해(Freiwillige Ökologische Jahr, FÖJ)를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자원봉사법 제1조).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원봉사는 배움활동과 교육활동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동법은 자원봉사기관과 봉사활동지에 교육학적 요소를 요구하며, 사회적, 문화적, 간문화적 지식을 전달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책임의식과 환경과의 지속적인 어울림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사회적 자원봉사의 해 또는 생태적 자원봉사의 해를 수행하는 청소년들은 최대 24개월까지 활동하며, 그 활동을 유연하게 분할하여 행할 수 있다. 즉 6개월 이상의 활동은 국내외활동의 병행이나 3개월 단위로 수행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6조제1항제3호).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기관과 봉사활동지에 의해 법정사회보험에 가입되며(동법 제9조), 공인된 반전주의자들은 공익근무 대신에 법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최소 12개월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2010년 12월 1일 병역법개정법률의 발효로 인하여 최소기간이 8개

일로 단축되었다.

1) 개 관

의무교육을 마친 27세 미만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Das Gesetz zur Förderung von Jugendfreiwilligendiensten; JFDG)⁹¹⁾ 시민적 나눔의 특별한 형태로서 사회적 자원봉사해(Freiwillige Soziale Jahr, FSJ)와 생태적 자원봉사의 해(Freiwillige Ökologische Jahr, FÖJ)를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자원봉사법 제1조)

2) 주요내용

청소년의 자원봉사는 배움활동과 교육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원봉사기관과 봉사활동지에 교육학적 요소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간문화적 지식을 전달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책임의식과 환경과의 지속적인 어울림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동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사회적 자원봉사의 해 또는 생태적 자원봉사의 해를 수행하는 청소년들이 최대 24개월까지 활동하며, 그 활동을 유연하게 분할하여 행할 수 있다. 즉 6개월 이상의 활동은 국내외활동의 병행이나 3개월 단위로 수행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6조제1항제3호).

사회적 자원봉사는 주로 스포츠기관이나 박물관 등의 보육시설이나 탁아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생태적 자원봉사는 동물보호기관이나 자연보호재단이나 농장에서 수행된다. 그 밖에 외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국제 청소년자원봉사(Internationaler Jugendfreiwilligendienst; IJFD)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기관과 봉사활동지에서 법정사회보험에 가입되며,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9조). 한편 공인된

91) BGBl. I S. 2854.

반전주의자들은 공익근무 대신에 법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최소 12개월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2010년 12월 1일 병역법개정법률의 발효로 인하여 최소기간이 8개월로 단축되었다.

(3) 명예직 활동

1) 의 의

독일에 있어서 명예직(Ehrenamt)은 원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롭고 자유로운 공직을 의미한다. 명예직 종사자는 특정기간 동안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다. 또한 명예직 활동(Ehrenamtliche Tätigkeit)에 따른 비용보상이 없어 오늘날 점점 자원봉사 내지 시민적 나눔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유럽 내 100만명의 자원봉사자를 표창하기 위해 2011년을 ‘유럽 명예직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최근 독일에서 14년 이상 명예직 종사자들의 수가 대략 2천 3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예직 활동에는 아동, 환자, 고령자를 돌보는 것을 제외되며, 주로 청소년 기관, 자연보호와 환경보호, 아젠다 21 프로젝트, 동물보호, 산악회, 전화상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Diakonie), 구제기관, 장애인시설, 스포츠, 문화 관련 단체 등에서의 활동이나 자원소방관으로서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

2) 세제혜택

명예직 활동에 따른 세제혜택은 비용상환이 있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정 한도 범위에서 조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훈련교사, 보육교사, 도우미, 요양보호사 또는 유사한 부업 활동이나 국내 공법인이나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적, 자선적,

종교적 목적의 후원시설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매년 2,100유로 (기존 1,848유로)까지 비과세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3조 제26호). 다만 기관장이나 경기장관리자 등은 500유로까지 면세된다(소득세법 제3조 제26a호).

4. 시사점

독일의 시민적 나눔활동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국가는 세법상의 지원을 통해 개입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방이나 주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재정적 유익이나 보수가 지원되는 나눔활동들이 생겨남으로써 이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시민적 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명예직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을 수용하면서 부수적인 소득에 대한 세제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기부에 있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은 생애학습이란 기초 하에 사회·문화적 기능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의 강화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간 중에 사회보험적 혜택과 비용상환을 인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자원봉사의 경우 교육활동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원봉사와 생태적 자원봉사로 구분하여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근무에 대한 보완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시민적 나눔은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통해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나눔에 관련한 법체계를 다지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 4 장 나눔문화 확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선방안

1.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

자원봉사를 활성화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의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법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제3항).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⁹²⁾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별첨5)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표에 따르면,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범죄예방 및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공명선거,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공공행정 사무지원, 기타 공익사업 수행 등의 대분류아래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을 정하고 있다.⁹³⁾

92)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3474호(2010.10.14)

93)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의 대분류에서는 김장김치 만들기와 나들이 보조가 각 8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호스피스 활동이 각 4시간으로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의 대분류에서는 피해복구활동, 응급구조활동이 각 8시간씩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 간병인 필요시 우선 지원 및 비용 지원, 공공분야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및 자율성 보장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제2항).

현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247개 중 62%인 151개가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는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단기간에 자원봉사센터의 전국적 설치라는 자원봉사활동의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추으로써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가 민·관 협치의 발현이 되어야 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관주도로 행해지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이용, 비전문성, 실적위주 행정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측면도 있다.

민·관의 협치 영역인 자원봉사영역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직영이라는 개입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의 취지에 맞게 별도법인화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영센터의 별도법인화 또는 민간위탁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함께 민간의 후원 또는 모금 등의 재정 확보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인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그리고 자율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자원봉사활동이 행해지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 2 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제 도입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은 제정 당시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년 제정)으로 출발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5년 3차개정)으로, 다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년 6차개정)로 개정되면서, 점차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즉, 등록된 자만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기부금품법은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상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않고 모집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제15조), 현행 기부금품법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제16조)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과거의 규제적 측면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전에는 기부행위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기부행위를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나눔문화의 저변 확대를 나눔문화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기보다는 권장하여 많은 기부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법은 구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 등록

제를 취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등록 자체를 번잡한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부금품을 더욱 손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적 측면을 더욱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부금품모집의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등록의 불편 등을 우회하기 위하여 후원금, 찬조금 등의 명칭으로 변형적 모금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나눔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원칙허용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

현행법 제4조제2항은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호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모집유형별 등록내역〉

구분	합계	자선 사업	국제 구호	북한 지원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재해 구호	기 타 **
건수	97	39	19	10	6	4	4	3	1	11
억원	1,145	642	205	1	46	96	20	1	100	34
비율		(56%)	(18%)	(0.1%)	(4%)	(8%)	(2%)	(0.1%)	(8.8%)	(3%)

* 유괴, 성범죄 예방, 여성·다문화

** 축제행사, 전직 대통령 동상건립 등

이는 법령상 인허가제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고도 있는 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규제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인허가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인허가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개념〉

원칙금지 규제체계	원칙허용 규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국가의 감독·규제 위주 법체계 • 기본권의 최소 보장 • 융합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 곤란 • 유해행위·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민간의 자율·창의 중심 법체계 • 기본권의 최대 보장 • 융합 등 기술변화에 기민한 대응 가능 • 유해행위·영업 방지 등은 사후 관리감독으로 해소
-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규제	- 꼭 필요한 만큼만 규제

현 행	개정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금지 ○ 예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구제 - 재난구호 - 자선 -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진흥 등 8개 분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허용 ○ 예외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활동

개정시안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네거티브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모집등록 대상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져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품법 개정 연혁〉

제 명	시 기	기부금품모집 허용방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1951년 ~ 1995년	-원칙금지, 예외적허용(포지티브방식) -허가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1996년 ~ 2006년	-원칙금지, 예외적허용(포지티브방식) -허가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2006년 ~ 현재	-원칙금지, 예외적허용(포지티브방식) -등록제
개정시안		-원칙허용, 예외적금지(네거티브방식) -등록제

다만, 예외적으로 모집이 금지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외적 금지사업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⁹⁴⁾,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94) 행정안전부는 2012년 9월 3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①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에 최소한의 규제를 명목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지만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해석에 있어서 정부의 재량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등과 관련

수 있다.

3.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⁹⁵⁾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사례⁹⁶⁾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집완료 이후 2년 이내에 기부금품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당초 모집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하거나, 이자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

(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제도 개선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의 저변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부금모집의 신고제로 인하

한 사업의 모금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9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행에 있어서 통상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 제출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연장 시에도 5년까지로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96) 당초 7억원을 모집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최장 5년)하여 이자수익만으로 장학사업 수행한 사례가 있다.

여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모금행위로 인한 기부자의 모금 피로도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집된 기부금품이 본래의 모금취지에서 벗어나 착복되거나 또는 기부금품 사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모금행위의 강요 등으로 나눔문화의 확산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기부금품법은 제8조에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제8조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범위의 범위와 내용이 나눔문화의 저변을 확대하여 소액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의 모집활동과 배분상태를 세분화하여 모금규모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할 수 있는 나눔정보 공개 제도를 따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중단·완료 및 사용·타목적 사용 공개의 개선

현행법 제14조제2항⁹⁷⁾ 및 현행법 시행령 제19조제3항⁹⁸⁾에서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

97)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98)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①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③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모집금품의 총액·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공개방식은 기부자가 일일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부자가 공시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의 중단, 기부금품의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에 있어서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 모집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이 미흡으로 인하여 기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서 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공개사유(모집 중단, 기부금품 사용 등) 발생시 현행 14일 공개게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자는 진행중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현 행	개정시안
<p>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p> <p>① (생 략)</p> <p>②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p>

현행	개정시안
③·④ (생략)	<p>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또한 같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5.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실시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는, 기부금품을 어떻게 잘 모집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자격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에 있어서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실태를 볼 때, 기부금품 모집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지, 그리고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기부형식이 다양화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단체가 증가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경우 이러한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6. 모범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1)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조치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 대하여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회환원적인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수기부자를 등록·관리하는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부의 날 제정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기부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부의 날을 제정하여 기부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하다. 이에 따라 이웃에 대한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연말에 기부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12월 15일을 사회기부의 날로 정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제 3 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격 부여 문제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의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지원법”으로 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공익활동을 수행한다면 법인여부를 불문한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인으로서의 허가를 얻지 못한 비영리단체가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행정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때에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의 범위는 공익사업에 소요된 경비만을 지원받는다. 또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비영리단체지원법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성립된 법인이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에게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 사실적으로 성립된 법인은 성립근거법령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로서의 행위능력을 보유하고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⁹⁹⁾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99) 법인격을 갖지 않음에 따라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당해 단체의 행위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권리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당해 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은 비영리법인의 성립을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에 비하여 수월하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을 제정(1998년 3월 25일 법률 제7호)했다.

(3) 개선방안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이라 한다)은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민법이나 기존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인격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비영리단체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도록 하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일본의 NPO법과 아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일본의 NPO법이 인정을 통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반면에서 우리의 비영리단체지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인의 법인격부여는 「민법」을 근간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관계법 등 개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의 형태만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비영리법인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신대지진 때이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나 소규모단체들이 활동하였으나 법인격이 없으므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한 민간 나눔활동에 대한 지원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바,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여 민간 나눔의 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단체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등록제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등록에 의한 법인격의 인정은 일본의 NPO법이 인정에 의한 법인격의 인정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비영리단체법 제4조의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등록을 행한 단체는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이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등록제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법 제2조의 규정을 갖춘 단체가 동조 제6호의 취지와 같이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격을 기반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본의 NPO법에서 인증제를 취하여 비영리단체들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개 문제

현행법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¹⁰⁰⁾,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선정 및 활동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영리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적정한

100)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8조). 또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회계집행을 적발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안 제8조 및 제9조).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개정시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개정 등도 필요하다.

현 행	개 정 시 안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조(사업계획서 제출) (생 략)</p> <p><신 설></p> <p>제 9 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8 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 9 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 -----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보조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시 안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절 신탁법의 개선방안

1. 공익신탁제도의 개선

(1) 공익신탁의 의의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여, 「신탁법」은 이들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신탁의 목적이 사익의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탁관계를 “공익신탁”이라 한다.

(2) 공익신탁의 문제점

현행 「신탁법」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공익신탁으로 분류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탁법은 신탁이라는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기에 사익신탁에 대하여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절차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전형적인 사법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허가주의를 취함으로써 신탁이라는 사법관계를 공법관계로의 편입을 시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과 같이 공익신탁이 신탁설정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워서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다.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 언제라도 재산의 공탁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익신탁과는 달리 운용적 측면에도 직접적으로 주무관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에 따른 신탁 설정과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탁의 허가권자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어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익신탁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재량이 달리 적용될 우려가 있다.

「신탁법」은 일정한 목적을 금융적 형태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금융에 관하여는 비전문가의 지위에 있는 “관” 하여금 공익신탁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하는 것은 신탁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3) 개선방안

현행 공익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신탁설정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사익신탁에 비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익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익신탁을 「신탁법」에서 분리하여 「(가칭) 공익신탁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 「신탁법」을 개정하여 공익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제와 관리·감독권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법으로 「(가칭) 공익신탁법」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이 존재하는 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분개정방식에 따라 공익신탁설정에 대한 허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과연 누가 공익신탁설정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

한 과제가 남는다.

이는 영국의 공익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조직을 두는 것으로서 공익 신탁설정을 누가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8장(공익신탁)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면 신탁법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도 법 개정안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 신설

최근 우리 사회는 부유층의 증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의 인식 확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본인이 가진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과 대비 문제로 실제로 재산을 기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산을 기부하면서도 여생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부모델을 검토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 “기부연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법」에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눔문화의 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부연금의 법적 설계는 다음과 같다.

①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위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갖는 수익권이 모두 소멸하는 공익신탁인 기부연금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6조의2제1항).

② 수탁자는 위탁자등의 사망시까지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권에 기한 급부를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6조의2제2항).

③ 신탁을 설정한 후에는 신탁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다(안 제66조의2제3항).

④ 신탁재산 중 연금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을 공익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66조의3).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6조의2(기부연금신탁의 설정)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탁행위로 위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갖는 수익권이 모두 소멸하는 공익신탁(이하 “기부연금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등의 사망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권에 기한 급부를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
<신 설>	제66조의3(기부연금신탁재산의 운용)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총액에서 위탁자등에게 제66조의 2제1항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연금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을 공익사업(수익사업을 포함한다)의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법인이란 “자연인”에 대응된 개념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재산 또는 사람들의 단체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인(人)의 한 종류이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과 재산의 집합체로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를 의미한다. 법인 설립에 대한 현행법을 보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민법」이 기본법이 되고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이 있다(동법 제1조).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 개별법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영리법인을 두고 있는데, 영리법인은 「상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회사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은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의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는 비영리 또는 공익성에 대한 주무관청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서 성립이 좌우된다.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의 영리법인에 대응한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일정한 규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나눔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실체를 본다면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법인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익법인법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법인으로써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목적은 더욱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동법 제2조). 여기서 주목할 것

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사법상의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 공익법인법은 벌칙조항을 둬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한다기보다는 규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개선방안

현행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비영리법인법에 해당하는 법인은 출연재산이나 재원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4조제1항), 출연재산이나 재원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주무관청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 성립이 결정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의사에 따라 설립허가 여부가 좌우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성과 출연재산, 출연재원의 적정성을 주무관청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영국의 공익위원회나 일본의 NPO법에서와 같이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여야 재량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이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강영숙, 조정아, 비영리조직의 성장단계별 핵심 조직관리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9(1), 2008.
- 강철희, “온라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언”, 『IT&SOCIETY』25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강철희·이민영,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9. 4.
-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법학, 51(2), 2010.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07.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시스템.
- 굿네이버스, “2008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자료집”, 2008.
- 권혜나, “나눔문화 확산 정책의 현황과 전망”, 『법연』제2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12.
- 기획재정부,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기획재정부, 2009. 7. 8.
- 김남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성질 등”, 『법률신문』 2000년 4월 6일, 제2873호.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2005.

참고 문헌

- 김문길,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육성정책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1.
- 김미숙, “기부 인프라 탄탄한 미국과 영국의 기부문화”, 「미래정책포커스」 제9호, 인터넷 연구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11. 15.
- 김연수·이광석,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2011.
- 김은홍·서정우·한인구, 비영리법인의 관리모형 개발 및 현황분석: 장학 및 학술법인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5(1), 1996.
- 김인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30.
- 김진수,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6-10, 한국조세연구원, 1996.
- _____,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7. 31.
- _____, “기업의 기부활동과 조세정책”, 「재정포럼」2005년 9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노진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99.
-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대한적십자사, 2010.
- 민병로,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와 법인화, 민주주의와 인권, 10(2), 2010.
- 박소현,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박정우 외 2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4.

- 배 도,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비영리연구」 제 10권 1호, 한국비영리학회, 2011.
- 백운찬,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법무부,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를 꿈꾼다: 「공익신탁법」 입 법예고 -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보도자료 : 통계, 2011.
- _____, “기부를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편리하게 : 법의 날 기념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 2010.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풀뿌 리모금활성화와 투명성제고를 중심으로 -”, 2011. 4.
- _____,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07, 2008, 2009.
- 서희열 · 심충진 · 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 학연구」 제25권 제25호, 2008.
- 손원익, “세제지원 확대와 투명성 제고”, 인터넷 연구자료,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 2010.
- _____,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 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1.
- 손원익 · 김진수,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기 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손원익 · 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손원익 · 김정아 · 송은주,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 연구원, 2007. 11.

참고 문헌

- 손원익·김진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_____,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이 투명성 제고방안」,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7. 7.
-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2008. 2.
-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법학논총, 27(2), 2010.
- 신경희, “영국의 나눔문화 확산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신경희·정순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 심상달·고건·권영준·이승은,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2008.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자료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_____,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발표 세미나 자료집』, 2010.
- _____, 『지역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연구 보고서』, 2007.
- 양재모, 비영리법인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제14회 학술대회발표논문, 법과 정책연구, 4(2), 2004.
- 여의도연구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9.
- 예종석,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나눔문화의 정착방안, CEO Report No. 12, 경기개발연구원, 2010.

- 윤영진·박재준·이경환·윤여민, “나눔포털 서비스 구축방안 및 효용성 검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보건복지부연구용역보고서, 2010. 5. 31.
- 이성록,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회자원봉사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7. 23.
- 이은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모금 활성화방안 연구”, 社會福祉 = Social Welfare. 통권 제189호 (2011년 여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6. 30.
- 이재욱,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중기,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9. 12. 18.
- 임규진·이전오,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2.
-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7·2008.
- 전종섭, 공익법인 설립·운영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명주·박지은,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정미애, 2005, 제도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시민사회, 한국국제지역학회보, 제5집, 101-125.
- _____,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 국제정치론집, 42(4), 2002.
- _____, 일본의 시민사회와 NPO: 행정과 NPO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6(2), 2002.

참고 문헌

- 정영수 · 이윤희, “디지털 시대의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IT&SOCIETY』 25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 정정화, 정부와 NGO의 관계 비교연구: 미국, 일본, 한국의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1), 2006.
- 정진경, 정부 지원 NGO의 조직특성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6(2), 2002.
- 정진욱,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관련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흥식, “개인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 『미래정책포커스』제9호, 인터넷 연구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0. 11. 15.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한국자원봉사포럼, 2008. 10. 2.
- 최현대, 공익법인의 본질 재고를 통한 활성화에 대한 일고찰, 사회과학연구, 15(2), 2009.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개인 기부 현황 및 발전 가능성 진단”, 『KB daily 지식 비타민』, 12-43호, 2012.
-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2011.
-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등록.
- 한국궤립조사연구원, “가칭 나눔의 날 제정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2009. 12. 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복지정보센터, “온라인모금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눔문화 확산,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기대: 성별 경험차이 반영한 나눔 활동 확산 방안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한국자원봉사포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 민간·지역단위 자원봉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제64회 정기포럼, 2009. 9. 10.
- 한국자원봉사포럼협의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한국자원봉사운동의 자율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61회 정기포럼, 2008.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국격제고를 위한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연구”, 2010. 11.
-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나눔현황조사」, 2010. 1.
_____, 「온라인모금의현황및활성화방안」, 정보문화·정보격차이슈리포트, 통권71호(vol.6, no.10), 2009.
- 한국조세연구원, 「기부문화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_____,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_____,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 2010.
- 한혜수, “기업 사회공헌활동 국내외 추이와 시사점 : 한·미·일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 행정안전부, “2008 전국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안전부, 2009.
_____, “2008 전국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연구(1999년~2008년 자원봉사 현황 비교)”, 행정안전부, 2009.
_____,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자료집, 2011. 3. 11.
- 허은영,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2. 국외문헌

Carol Tullo, 2006, Charities Act(C. 50), The Stationery Office and Queen's Printer of Acts of Parliament.

<http://community.klaw.go.kr/bill/2000000012742>

Bmycharity, <http://www.bmycharity.com>

CheerSpysee, <http://cheer.spysee.jp>

Kindertafel, <http://www.donate-a-meal.com>

Melisa S. Brown, 「Giving U.S.A」, 2008

The Newyork Times, 「An App for Donating Money While You Shop」,
<http://bits.blogs.nytimes.com/2010/03/03/an-app-for-donating-money-while-you-shop/>

Yoshiho Matsunaga, 「Giving Japan」, 2008

GfK, Bilanz des Helfens 2012, Deutscher Spendenart e. V., 2012. 3. 15.

Thomas Adam, Simone Lässig, Gabriele Lingelbach. Stifter, Spender und Mäzene: USA und Deutschland im historischen Vergleich.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009. ISBN 978-3-515-09384-2.

www.deutscher-engagementpreis.de

www.bmfsfj.de